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0
----------	-----

제출년월일 : 1999. .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현행 수질검사결과에의 광고금지등 제한규정이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조항으로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하고
- 보건소내 입원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입원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수질검사 시험결과에의 광고등 금지조치조항 삭제 (안 제10조)
- 나. 수질검사 성적원본의 말소조항 삭제 (안 제11조)
- 다.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 삭제 (안 제15조)
- 라. 먹는물수질검사및검사등에관한규칙개정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서식변경 (안 별지제3호내지 제5호서식)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3호 내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0조 내지 제12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 내지 제19조”를 “제13조 내지 16조”로 한다.

별지중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파 주 시 보 건 소

우편번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FAX _____ 담당자 _____
문서번호 _____ 시행일자 _____
받 음 _____ 보 낸 _____ (인) _____
제 목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교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검체내용

검 체 명		의뢰근거		접수번호	
채수장소		채수일시		접수일자	
채수방법		검사목적			

2. 수질검사결과

검사항목	기 준	검사결과	검사항목	기 준	검사결과
1. 색도 (Color)	5도이하		5. 암모니아성질소 (NH ₃ -N)	0.5mg/ℓ 이하	
2. 탁도 (Turbidity)	2도이하		6. 질산성질소 (NO ₃ -N)	10mg/ℓ 이하	
3. 냄새 (Odor)	무취		7. 일반세균수 (Total Colony Counts)	100CFU /1ml이하	
4. 맛 (Taste)	무미		8. 대장균군 (Total Coliforms)	불검출 /50ml	
판 정 :					

(별지 제4호서식)

파 주 시 보 건 소

우편번호 주소 전화 FAX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보 념 (인)

제 목 공중목욕장(원수) 수질검사성적서교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별표3] 제2호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중목욕장(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기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검체내용

검 체 명		의뢰근거		접수번호	
채수장소		채수일시		접수일자	
채수방법		검사목적			

2. 수질검사결과

검사항목	기 준	검사결과
1. 수소이온농도(pH)	5.8 ~ 8.6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KMnO ₄ Consumed)	10mg/ ℓ 이하	
3. 색도(Color)	5도이하	
4. 탁도(Turbidity)	2도이하	
5. 대장균군 (Total Coliforms)	불검출/50ml	
판 정 :		

(별지 제5호서식)

파 주 시 보 건 소

우편번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FAX _____ 담당자 _____
문서번호 _____ 시행일자 _____
받 음 _____ 보 냄 _____ (인)
제 목 공중목욕장(욕수) 수질검사성적서 교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제2호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중목욕장(욕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기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검체내용

검 체 명		의뢰근거		접수번호	
채수장소		채수일시		접수일자	
채수방법		검사목적			

2. 수질검사결과

검사항목	기 준	검사결과
1. 탁도(Turbidity)	3도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KMnO ₄ Consumed)	25mg/ℓ 이하	
3. 대장균군 (Total Coliforms)	1ml/1이하	
판 정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7조 (수질검사시험의뢰) ①보건소에 검사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u>별지 제2호 서식</u>의 시험의뢰서와 <u>별표2</u>에 정한 시험 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u>별지 제2호서식</u>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수 있다. ②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 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u>별지 제3호서식</u>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질검사시험의뢰) ① <u>별지 제1호 서식</u> <u>별지 제1호서식</u> ② <u>별지 제2호서식</u>.	별지 제1호서식 삭제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9조 (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검사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의 시험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 (시험결과와 광고등 금지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 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 할 수 없도록 시험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제9조 (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별지 3호 내지 제5호 서식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먹는물관리법상 광고금지조항이 있어 조례상 규제할 실효 성이 없음 "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생 략)	(삭 제) 제10조 내지 제12조 (현행 제12조 내지 제14조와 같음) (삭 제)	현보건소 체제상 입원실이 없음
제15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①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대한 입원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② 보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내지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수 있으며, 이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제16조 내지 제19조 (생 략) (별지제1호서식) (생 략)	(삭 제) 제13조 내지 제16조 (현행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같음) (삭 제)	제15조 삭제와 관련임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시 험 결 과			2. 수질검사결과				
시험항목	기 준	시험성적	검사항목	기 준	검사 결과	기 준	검사 결과
색도(Color)	5도이하		1. 색 도 (Color)	5도이하		5. 암모니아성질소 (NH ₃ -N)	0.5mg/ℓ 이하
탁도(Turbidity)	2도이하		2. 탁 도 (Turbidity)	2도이하		6. 질산성질소 (NO ₃ -N)	10mg/ℓ 이하
냄새(Odor)	무취 소독으로 인한		3. 냄 세 (Odor)	무취		7. 일반세균수 (Total Colony Counts)	100CFU /ml이하
맛(Taste)	무미 냄새, 맛 제시		4. 맛 (Taste)	무미		8. 대장균ms (Total Coliforms)	불검출 /50ml
암모니아성질소 (NH ₂ -N)	0.5mg/ℓ 이하		판 정 :				
질산성질소 (NO ₃)	10mg/ℓ 이하						
일반세균수 (1ml중)	100이하						
대장균군 (50ml중)	음성						
판 정 :							
19 년 월 일							
파주시보건소장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별지 제5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가 검 물 명: 시 험 목 적: 채 수 장 소: 의뢰자주소: 성 명: 접수년월일: 19 년 월 일 채수년월일: 19 년 월 일 검 사 방 법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제2호에 준하여 시험함. 비 고 : 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목적 이외의 광고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별지제4호서식) 파 주 시 보 건 소 우편번호 주소 전화 FAX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 보 념 : 인 제 목 : 공중목욕장(원수) 수질검사성적서 교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중목욕장(원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기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검체내용 <table border="1"> <tr> <td>검 체 명</td> <td>외퇴근거</td> <td>접수번호</td> </tr> <tr> <td>채수장소</td> <td>채수일시</td> <td>접수일자</td> </tr> <tr> <td>채수방법</td> <td>검사목적</td> <td></td> </tr> </table>	검 체 명	외퇴근거	접수번호	채수장소	채수일시	접수일자	채수방법	검사목적		
검 체 명	외퇴근거	접수번호									
채수장소	채수일시	접수일자									
채수방법	검사목적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시 험 결 과			2. 수질검사결과		
시험항목	기 준	시험성적	검사항목	기 준	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	5.8 ~ 8.5		1. 수소이온농도(pH)	5.8-8.6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mg/ℓ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KMnO ₄ Consumed)	10mg/ℓ 이하	
색도(Color)	5도이하		3. 색도 (Color)	5도이하	
탁도(Turbidity)	2도이하		4. 탁도 (Turbidity)	2도이하	
대장균군 (50㎖중)	음성		5. 대장균군 (Total Coliforms)	불검출/50㎖	
판 정 :			판 정 :		
19 년 월 일					
파주시보건소장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별지 제6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가 검 물 명: 시 험 목 적: 채 수 장 소: 의 퇴 자 주 소: 성 명: 접수년월일: 19 년 월 일 채수년월일: 19 년 월 일 검 사 방 법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제2호에 준하여 시험함. 비 고 : 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목적 이외의 광고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별지 제5호서식) 파 주 시 보 건 소 우편번호 주소 전화 FAX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 보 범 : 인 제 목 : 공중목욕장(욕수) 수질검사성적서 교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제2호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중목욕장(욕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기 수질 검사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검체내용 <table border="1"> <tr> <td>검 체 명</td> <td>외퇴근거</td> <td>접수번호</td> </tr> <tr> <td>채수장소</td> <td>채수일시</td> <td>접수일자</td> </tr> <tr> <td>채수방법</td> <td>검사목적</td> <td></td> </tr> </table>	검 체 명	외퇴근거	접수번호	채수장소	채수일시	접수일자	채수방법	검사목적		
검 체 명	외퇴근거	접수번호									
채수장소	채수일시	접수일자									
채수방법	검사목적										

현행			개정		개정사유
시험결과			수질검사결과		
시험항목	기준	시험성적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탁도 (Turbidity)			1. 탁도 (Turbidity)	3도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KMnO ₄ Consumed)	25mg/ℓ 이하	
대장균군 (1ml중)			3. 대장균군 (Total Coliforms)	1ml/1이하	
판정 :			판정 :		
19년 월 일					
파주시보건소장					